#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4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 박주민·조 국·김남근

노종면 · 김선민 · 장종태

황명선 · 김우영 · 이성윤

임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 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이것은 입법부가 법률로 세세한 행정 절차까지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대응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그러나 대통령령 등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이므로 행정입법이국회가 법률로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등이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논란이되고 있음. 법률이 정한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대통령령 등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포된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 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③ 의원은 공포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하거나 제 3항에 따라 의원이 검토를 요구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야 한다.
- ⑤ 상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전문위원은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 한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공포된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 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원 10 명 이상의 연서로 소관 상임위 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의원이 검토를 요구한 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이하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등이 법률 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 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 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 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 공한다.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렁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 <삭 제>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 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 공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

<삭 제>

<삭 제>